

의안번호	2212052
의 퇴 인	추경호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7.
추계번호	25F418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벤처 및 창업기업 지원 등을 위한 조세특례 적용기한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벤처 및 창업기업 등을 위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7년 2,796억원, 2029년 2,796억원 등 2027~2029년까지 3년간 총 8,388억원(연평균 2,79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내국법인의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 등에의 출자·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및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,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등 항목의 적용기한 연장에 대한 세수효과는 자료의 부재 등으로 합리적인 추계를 할 수 없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및 소득세,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3조)	-123	-123	-123	-369	-123
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3조의2)	-586	-586	-586	-1,758	-586
내국법인의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 등에의 출자·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3조의3)	추	정	곤	란	
내국법인의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3조의4)	추	정	곤	란	
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4조)	-60	-60	-60	-180	-60
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5조)	추	정	곤	란	
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6조)	-2,027	-2,027	-2,027	-6,081	-2,027
계	-2,796	-2,796	-2,796	-8,388	-2,796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3조 (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)	○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또는 지분 양도차익이나 출자를 통해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－ (적용기한) 2025.12.31. → 2028.12.31.
2	안 제13조의2 (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)	○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－ (적용기한) 2025.12.31. → 2028.12.31.
3	안 제13조의3 (내국법인의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 등에서의 출자·인수에 대한 과세특례)	○ 내국법인의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 － (적용기한) 2025.12.31. → 2028.12.31.
4	안 제13조의4 (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·부품·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)	○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·부품·장비전문기업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 － (적용기한) 2025.12.31. → 2028.12.31.
5	안 제14조 (창업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)	○ 창업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－ (적용기한) 2025.12.31. → 2028.12.31.
6	안 제15조 (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)	○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－ (적용기한) 2025.12.31. → 2028.12.31.
7	안 제16조 (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)	○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－ (적용기한) 2025.12.31. → 2028.12.31.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 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3조 (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)	○	
2	안 제13조의2 (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)	○	
3	안 제13조의3 (내국법인의 소재·부품·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·인수에 대한 과세특례)	×	○ 최근 5년간 동 조항의 특례실적이 발생하지 않아 향후 특례실적 발생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 제외
4	안 제13조의4 (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·부품·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)	×	○ 최근 5년간 동 조항의 비과세 실적이 발생하지 않아 향후 양도차익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 제외
5	안 제14조 (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)	○	
6	안 제15조 (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)	×	○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한 벤처 기업의 제2차 납세의무 발생 여부 및 면제금액 실적 등이 부재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 제외
7	안 제16조 (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2025년에 의결되어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
 - 2026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는 2027년에 이루어짐에
따라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
-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
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(안 제13조)

- 향후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모는 「2026년 조세지출예산서」상 2026년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
-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(안 제13조의2)
 - 「2026년 조세지출예산서」상 2025년 감면실적(잠정치)을 바탕으로, 2026년 공제액은 2025년 상반기 벤처투자 증가율과 동일하게 증가하며, 2027년 이후 공제액은 2026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
-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(안 제14조)
 - 향후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모는 「2026년 조세지출예산서」상 2025년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
-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(안 제16조)
 - 향후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모는 「2026년 조세지출예산서」상 2025년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
- 이외에도 개정안은 내국법인의 소재·부품·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·인수에 대한 과세특례, 벤처투자회사의 소재·부품·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,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, 합리적으로 추계가 불가능하여 본 추계에서 제외함(안 제13조의3, 제13조의4 및 제15조)
 - 내국법인의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 등에의 출자·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및 벤처투자회사의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의 경우, 최근 5년간 해당 항목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이 존재하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시점 및 규모를 추계할 수 없음
 -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의 경우, 신성장·원천기술에 투자한 벤처기업별 제2차 납세의무 발생 여부 및 면제금액 자료가 부재하여 합리적인 추계가 불가능함

3. 상세 추계내역

가.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3조)

(1) 제도개요 및 실적

□ (제도개요) 동 제도는 벤처투자회사 등이 창업기업 등에 출자한 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등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등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로 벤처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

○ 다음의 출자로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과 벤처투자회사 등*이 해당 출자로 받는 배당소득은 비과세 대상

- 벤처투자회사, 창업기획자가 창업기업, 벤처기업,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
 -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, 벤처기업,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
 - 벤처투자회사, 창업기획자,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, 신기술사업금융업자, 기금운용법인 등이 창투조합 등을 통해 창업기업, 벤처기업, 신기술사업자,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
 - 벤처투자회사,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
 - 벤처투자회사,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,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해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
 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집합투자업자 등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, 벤처기업, 신기술사업자,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
- ※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: 벤처투자회사, 창업기획자,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

○ 개정안은 동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28년말로 3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

□ (감면실적) 2020년 이후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실적은 다음과 같음

○ 동 제도에 따른 법인세 비과세는 2020년 24억원에서 2023년 20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, 2024년 65억원으로 감소한 후, 2026년 123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

- 2022년 및 2023년의 경우, 자산시장 호황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이 주식 및 출자

지분 매도를 통해 투자수익을 실현하여 비과세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

[표 2]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추이: 2020~2026년(전망)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	2025(잠정)	2026(전망)
비과세 실적	24	41	120	205	65	120	123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.

(2) 추계방법

- 향후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는 연도별로 2026년 전망치(123억원)과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벤처투자회사 등이 창업기업에 출자한 주식양도차익의 실현시점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, 조세지출 실적치의 변동성이 높아 2026년 전망치가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[표 3]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비과세 규모 전망

(단위: 억원)			
구분	2027	2028	2029
비과세 전망	123	123	123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, 법인세는 2027년 123억 원, 2029년 123억 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369억 원(연평균 123억 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					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3조)	-123	-123	-123	-369	-123

나.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3조의2)

(1) 제도개요 및 실적

□ 제도개요)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

- 공제대상자: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, 신기술사업금융업자, 벤처기업 출자유한회사, 기금운용법인 등 내국법인
- 출자(투자) 대상
 - ① 창업기업, 신기술사업자,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
 - ② 창업·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기업, 신기술사업자,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
- 공제세액: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%
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

□ (감면실적) 2020년 이후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은 다음과 같음

- 동 제도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는 2020년 260억원에서 2022년 676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, 2024년 533억원으로 감소한 후, 2025년(잠정) 566억원으로 증가

[표 5]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실적: 2020~2025년(잠정)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	2025(잠정)
공제실적	260	335	676	652	533	566

자료: 정부의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벤처투자 실적) 2020년 이후 국내 벤처투자 실적은 다음과 같음

- 2020년 이후 t년도의 공제실적과 t-1년도의 벤처투자 실적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, 2025년 상반기 기준 벤처투자 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3.5% 증가
 - 공제실적(t년도)과 벤처투자 실적(t-1년도)의 상관관계: 0.917

[표 6] 국내 벤처기업 투자 추이: 2020~2025년 상반기

(단위: 억원, %)

	2020	2021	2022	2023	2024		2025
					상반기	전체	상반기
투자실적	80,962	159,371 (96.8)	124,706 (△21.8)	109,133 (△12.5)	54,856 (22.1)	119,457 (9.5)	56,780 (3.5)

주: ()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 자료

(2) 추계방법

- 2026년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는 2025년 상반기 벤처기업 투자 증가율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하고, 2027년 이후 세액공제는 2026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

[표 7]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공제액 전망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
공제액 전망	566	586	586	586	586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, 법인세는 2027년 705억원, 2029년 878억원 등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2,370억원(연평균 79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8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계	연평균
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13조의2)	-586	-586	-586	-1,758	-586

다.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4조)

(1) 제도개요 및 실적

- (제도개요)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투자자 등이 창업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및 지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
 - 공제대상: 창업기업, 벤처기업, 신기술창업전문회사, 신기술사업자, 창업기획자 등에 출자한 투자자, 벤처투자조합 등
 - 공제내용: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
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
- (조세지출 실적)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은 2019년 19억원에서, 2020년 212억원, 2021년 317억원으로 증가한 후, 2022년에는 124억원, 2025년에는 60억원으로 감소

[표 9]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
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	2025(잠정)
비과세 실적	19	212	317	124	23	53	60

자료: 정부의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-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5년 잠정실적(60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
 - 창업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·지분 양도차익의 실현시점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, 조세지출 실적치의 변동성이 큼에 따라 2025년 잠정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
[표 10]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비과세 규모 전망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7	2028	2029
비과세 전망	60	60	60

(3) 추계결과

- 창업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7년 억원, 2029년 억원 등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180억원(연평균 6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,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계	연평균
창업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4조)	-60	-60	-60	-180	-60

라.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6조)

(1) 제도개요 및 실적

- (제도개요)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거주자의 투자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하는 내용
 - 공제대상: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거주자
 - 공제율: (벤처투자조합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등에 투자한 경우) 10%
(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) 투자금액의 30~100%
※ 3천만원 이하 100%, 3천만원~5천만원 50%, 5천만원 초과 30%
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
- (조세지출 실적)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2020년 891억원에서 2023년 1,905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4년 1,861억원으로 감소
 - 2018년 이후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, 연도별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변동성은 크게 나타남

[표 12]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

(단위: 억원, %)

	2020	2021	2022	2023	2024	2025(잠정)
공제실적	891	1,075	1,785	1,905	1,861	2,027

자료: 정부의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-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세지출예산서의 2025년 잠정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향후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규 투자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고, 연도별 조세지출 실적의 변동성도 크게 나타나므로, 2025년 잠정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[표 13]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공제액 전망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
공제액 전망	2,027	2,027	2,027

(3) 추계결과

-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7년 2,027억원, 2029년 2,027억원 등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6,081억원(연평균 2,027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,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계	연평균
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6조)	-2,027	-2,027	-2,027	-6,081	-2,027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